

## 시공권 등 포기각서

2018년 10월 31일

수신 : 주식회사 우리핀테크대부

본 시공권 등 포기각서(이하 “**본 포기각서**”)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 263-56 번지 지상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총칭하여 “**본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 또는 “**본건 공사**”)과 관련하여, 당사, 주식회사 우리핀테크대부(이하 “**대주**”), [ ] 중앙건설 주식회사, 정종 [ ] 등과 사이에 2018년 10월 31일 체결된 대출약정서(이에 대하여 수정되거나 변경된 계약을 총칭하여 이하 “**대출약정서**”)와 관련되며, 본 포기각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포기각서에서 사용된 모든 용어는 대출약정서에서 사용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보유합니다.

당사는 본건 사업의 책임시공사로서, 본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1. 당사에 대하여 대출약정서상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고, 대주의 지정에 의하여 시공권 인수인으로 대체시공사가 확정되어 대주로부터 당사에 시공권 이전에 관한 서면통지가 있게 되는 경우, 당사는 위 확정된 인수인(이하 “**대체시공사**”)에게 시공권을 조건 없이 이전하고, 본건 공사현장을 명도할 것입니다. 이때, 당사는 대체시공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공권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의 이행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2. 대체시공사가 제1항에 따라 시공권을 인수하는 경우 당사는 민·형사상의 이의, 소 제기, 기타 민원 등 본건 사업의 시행 및 시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시공권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권한 및 법적 지위 등을 포기할 것입니다.
3. 대출약정서에 의한 차주의 대주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가 잔존하는 한,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공사의 기성부분(건축중인 건축물 포함)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신탁회사 또는 위탁자에 대한 공사비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본건 공사 현장에 대한 유치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



